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교정학 해설

1. 정답 ①

- ① 1주 이상 격리수용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② 동조 제2항
- ③ 동조 제4항
- ④ 동 시행령 제17조 제2항

2. 정답 ①

일반수용자는 흰색, 관심대상수용자와 조직폭력수용자는 노란색, 마약류수용자는 파란색, 사형 확정자는 붉은색이다.

3. 정답 ③

- ① 신문은 월3종 이내로, 도서(잡지 포함)는 월 10권 이내로 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35조)
- ② 방송편성시간은 1일 6시간 이내에서 정한다(시행규칙 제39조)
- ③ 형집행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 ④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 도서 및 성물을 수용자가 지니게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4. 정답 ②

청원은 소장면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행정심판 등과 함께 비사법적 구제수단이다.

5. 정답 ④

범죄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술을 학습하여 얻은 자기합리화의 결과로 보는 이론은 Matza와 Sykes의 중화기술이론이고, 애그뉴는 일반긴장이론을 주장하였다.

6. 정답 ②

발달범죄이론은 범죄의 모든 원인을 통합하기 위한 이론으로 1930년대 글룩(Glueck) 부부가 하버드대에서 한 비행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종단연구를 토대로 1990년대 샘슨(Sampson)과 라웁(Laup) 등이 재분석한 이론이다.

발달범죄이론의 하나인 인생향로(생애과정)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성장해 가면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한다. 따라서 어떤 단계에서 영향을 주었던 요인은 다음 단계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일반이론에 의하면 아주 어린 시절에 형성된 법 위반 성향은 평생 동안 지속된다고 하나, 인생향로 이론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발달이 출생 시나 출생 직후에 나타나는 주된 속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생애의 성장 전환점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성질은 변화하기 때문에 행동도 바뀌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생애과정 이론은 범죄성이 아주 어린 시기에 형성되고, 어린 나이에 일탈행위를 경험한 자는 후에 더 심각한 범죄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범죄개시의 나이가 어릴수록, 범죄경력은 더 빈번하고 다양하며,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7. 정답 ④

외적 타당도는 연구결과의 일반화가능성, 즉 연구결과를 다른 대상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실험적 연구는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통제하기 곤란하다.

8. 정답 ④

선택적 무능력화는 재범위험성을 예측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습범죄자나 중누범자만을 선별하여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9. 정답 ②

재심사에 따라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 범위에서 조정한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두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10. 정답 ③

- ① 통계적 예측법은 다른 예측법에 비해 객관성을 기할 수 있다.
- ② 임상적 예측법에 대한 설명이다.
- ③ 버제스는 3000명의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공통점을 추출하여 경험표인 예측표를 작성하여 객관적 범죄예측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 ④ 가석방을 결정할 때에는 수용생활중의 성적 뿐만 아니라 나이, 범죄동기, 건강상태,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

11. 정답 ④

- ①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교정시설 안의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 ②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나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개방처우급 ·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대상이고,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 ③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한 것은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시행규칙 제89조

12. 정답 ④

- ①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동법 제4조)
- ②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이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제32조 제1항)
- ③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제5조 제5항).
- ④ 동법 제30조

13. 정답 ①

- ①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 ②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번역 및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 ③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57조 제2항).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는 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용설비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57조 제2항).
- ④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는 쌀, 빵 또는 그 밖의 식품을 주식으로 지급하되,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를 고려하여야 한다(제58조 제2항)

14. 정답 ①

- ① 수용자를 부를 때에는 수용자 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거나 성명만을 부를 수 있다(동규칙 제12조).

15. 정답 ②

교정시설 밖에 있는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20조)

16. 정답 ①

- ① 시행규칙 제53조
- ② 소장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53조 제1항).
- ③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92조).
- ④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중 접견·전화통화·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작업시간 내내 하는 작업을 말한다(시행령 제95조).

17. 정답 ③

- ①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특별귀휴사유로서 일반귀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 ② 출소 전 취업준비는 일반귀휴사유에 해당하고 형기의 1/3이 경과되었으므로 가능하다.
- ③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는 일반귀휴사유인데, 형기의 1/3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허가할 수 없다.
- ④ 직계비속의 군입대는 일반귀휴사유이고, 무기형의 경우 7년 경과하면 가능하다

18. 정답 ④

지역사회교정은 범죄환경의 변화에 따른 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처벌의 필요성에 따라 등장하였으며 사회의 변화도 함께 요구한다는 것이지, 범죄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시도로 볼 수 없다.

19. 정답 ②

- ①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시행규칙 제59조의 2 제2항).
- ② 시행규칙 제59조의 4
- ③ 소장은 소년수형자등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수형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이 허가할 수 있는 활동에는 **발표회 및 공연 등 참가 활동을 포함한다**(시행규칙 제59조의 5).
- ④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59조의 3 제1항).

20. 정답 ③

- ①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②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게 하는 등 노인수형자의 교육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전문오락, 그 밖에 노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 ③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 ④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시행규칙 제48조 제2항).